

# 2019년 전환 교육 대상 여부 자가 점검표

■ 다음 사항을 체크하여 전환교육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 이전('18.9.12.) 자격 해당자 중 ① 또는 ②의 요건에 충족한 자

\* 고시 이전 자격해당자는 조건을 둘 다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①, ② 둘 중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전환교육 대상자임

①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체크항목	예	아니오
1. 고시 이전 (2018.9.12.)에 자격인증을 받고자 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2. 내가 가지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www.krivet.re.kr)> 에서 검색된다.		
3. 내가 가진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민간자격증 자격 기간은 유효하다. ※ 재발급 중이거나 보수교육 미수강으로 정지 등 확인 필수		
4. 나는 고시 이전(2018.9. 1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전환교육 수료 후 발달재활서비스 자격인증 시 관련 서류 제출)		
☞ 1, 2, 3, 4번 모두 '예' 에 해당된다면 전환교육 대상자		
☞ 1, 2, 3번은 '예'에 해당되지만 4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전환교육 대상자 이나 2019년 우선대상자는 아님. ※ 2020년부터 교육횟수 및 장소를 확대하여 모든 전환교육 대상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당 시기에 신청		

②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이나 1,200시간 이상인 사람 다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초과 이수한 수업 연한을 경력으로 인정이 된 경우 1년을 300시간으로 하여 계산

체크항목	예	아니오
1. 나는 고시 이전 (2018.9.12.)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감각재활, 운동재활, 미술 재 활, 음악재활, 심리운동, 재활심리, 청능재활, 행동재활, 놀이재활 등) 전공을 하였다.		
2.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의 경력 사항(해당하는 사항 하나에 답하세요)		
2-1. 나는 전문학사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으로 1,200시간 근무 하였다.		
2-2. 나는 학사(또는 석사)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달재활서비스 인력으로 600시간 근무하였다.		
2-3. 나는 학사와 석사 모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공을 하였다.		
3. 나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경력 증명이 가능하다 (경력증명서, 전자바우처 제공인력 현황 등)		
☞ 1, 2, 3 모두 '예'에 해당된다면 전환교육 대상자 ※ 2-3의 학사와 석사 모두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전공자의 경우에는 3번 해당 사항 없음		

■ 전환교육 대상 자격 관련 문의

-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관리 사업단 대표전화 ☎ 1544-6065

■ 전환교육 내용, 일정, 신청 관련 문의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교육부 대표전화 ☎ 043-710-9250, 9079